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 법적 상황과 성격(1945~1948)*

북한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김태윤**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신분이 변화하였다. 게다가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에 있던 일본인들과 이남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의 상황도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북지역에 잔류해 있던 ‘재북일본인’을 종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북한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꺼려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조차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북일본인들의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대우에 차별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하게 재북일본인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김일성’과 ‘소련군’ 중심으로 서술되어 오던 북한의 정치상황과 법체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재북일본인 기술자, 재북일본인, 북한 사법제도, 북한 형사법, 북한 차별 대우, 악질전직죄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한 2018년 “제1회 동아시아 차세대 연구 자포럼”(10월 5일)의 발표원고를 바탕으로 전면 재서술한 글입니다.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머리말

‘해방’이라는 사건은 한반도 내의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위치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다. 당시 재북일본인(在北日本人)¹⁾들과 북한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비전향장기수 김석형의 구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좌우간 이제야 달라졌으니까. 지배민족이 됐으니까. 우린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돼 빠렸으니까.²⁾

일본인들은 8·15와 동시에 식민자에서 패전국민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그 위치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방 직후 북한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형태는 주먹구구식이 대부분이었다.³⁾ 정식 재판 형식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인민재판, 군중재판으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일본인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재북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기 재조일본인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라, 이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아직도 밝혀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재북일본인 연구가 부족한

1) 아직까지 해방 직후 북한에 잔류해 있던 일본인에 대한 용어가 학계에서 통일된 상황이 아니다. 주로 ‘북한 잔류일본인’, ‘미귀환일본인’, ‘재북일본인’ 등으로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재북일본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따옴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2) 김석형 구술·이향규 정리,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서울: 선인, 2011), 185쪽.

3)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유는 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먼저 이들이 살았던 북한(北韓)에서는 재북일본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았고,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조차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북에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재북일본인들의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는 1차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해방 직후 북한의 “사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사를 연구하는 일부로써 연구⁴⁾되어 오다가 치안체제와 함께 단일 연구 주제로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⁵⁾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재북 일본인들을 주로 “일제청산”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고, 주로 적산처리나, 토지처리의 측면에서 분석이 시작되었다.⁶⁾ 한편으로는 이연식이 귀환의 측면에서 재북일본인들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는 재북일본인들이 북한에서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시각을 보인 시초가 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도 가능하다.⁷⁾ 이러한 재북일본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식민지 인적 유산으로서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로 북한의 산업 재건에 일본인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연구,

4)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1』(서울: 선인, 200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5) 연정은,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69권(2002); 김재웅, “해방 후 북한의 친일파와 일제유산 척결,” 『한국근현대사연구』, 66호(2013).

7)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2008); 최영호,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2008);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44호(2014).

잔류일본인 기술자나 본인 유용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⁸⁾

필자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발전시켜 재북일본인들을 인적 유산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들이 사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정당했는지 ‘법적 틀’ 속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들을 향한 법적 차별이 존재했는지, 당시 북한에서 우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인 기술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본인 기술자들과 일본인들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국가건설기 북한이 과거청산에 있어서 보인 모순적인 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본인들과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을 구별하여 대외정책적으로는 “완벽한 일제청산”을 선전하였다면, 내부적으로는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일본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결과적으로 국가건설기 북한의 모순적인 정책을 통해 그동안 ‘사회주의’라는 틀에 갇혀 해석되어오던 초기 북한의 정치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때문에 필자는 ‘우대’와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북 일본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한 사료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인 『로동신문』과 당시 사용되고 있던 법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법령집』과 『법령공보』 등이다. 해방 직후의 북한의 법령집과 결정서 등의 문서는 노획문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그 밖에 당 정책과는 별개로 외국인

8)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아베 게이지(安部桂司),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차문석 옮김(서울: 미지북스, 2009);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기술자 정책,” 『동북아역사논총』, 44호(2014)

9) 미국 노획문서 안에 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법령집은 NARA RG242 SA2007 2-16 Item # 1054에서, 사법기관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주요법령급 결정집은 NARA RG242 SA2007 7-360 Item #1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대한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령공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¹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사료는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들이 남긴 회고록이다. 일본인들의 주관적 기록이라는 1차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사료군이지만, 북한 공식기록에는 재북일본인들의 존재와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고록과 공식 간행물, 소련군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교차검증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북일본인들의 회고록은 북한 내부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본인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당시 북한 사회에서 법적장대에 ‘차별’과 ‘우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때문에 필자는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朝鮮終戰の記録』¹⁻⁴와 가마타 쇼지(鎌田正二)의 『北鮮の日本人苦難記一日窒興南工場の最後』, 사토 토모야(佐藤知也)의 『平壤で過ごした12年の日々』를 통해 당시 재북일본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 북한 당국이 일본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한 목소리는 김석형(비전향장기수)과 이승기(김일성종합대학 이학부 교수)의 회고록¹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밖에 1945~1950년 북한 내부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정리하기 위해서는 『북한관계사료집』¹²⁾을 중요 자료로 사용하였다.

10) 북조선 인민위원회법령 공보는 NARA RG242 SA2007 3-158-2 Item # 83에 속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법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11) 김석형 구술·이향규 정리,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이승기 지음, 김남현 옮김,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비달론 발명 과학자 이승기 박사의 수기』(서울: 615, 2011). 이 외에도 소련인의 시각에서 쓴 회고록인 A. 기토비차·B. 볼소프, 『1946년 북조선의 가을』, 최학송 옮김(서울: 글누림, 2006)이 있다.

12) 『北韓關係史料集』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를 정리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북한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北韓關係史料集』은 이하 『史料集』으로 약칭하고 간행기관(국사편찬위원회) 및 간행년도

2. ‘처벌’에 중점을 둔 재북일본인의 법적지위

1) 형사법적 지위: ‘악질전직죄’와 재판결과

소련군이 평양에 주둔하기 전까지 북한의 사법체계는 일관된 체계로써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과거 일제를 향한 분노는 일본인들을 향하게 되었다. 그때의 상황은 당시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회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요즘은 패전 전의 일본 통치기관 간부가 일제히 체포되어 식민통치의 죄상 추궁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평양경찰서의 감옥은 만원이라고 알려졌다. 또 일본인 경찰관이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군중에 의해 맞아죽는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참으로 처참한 것이었다고 한다. 지방에서 평양으로 피난 온 일본인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죽은 듯이 피난소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¹³⁾(고딕체는 필자가 강조).

회고의 내용처럼 8월 15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 전직자와 각종 기관건물을 향한 폭행과 약탈이었다. 게다가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가 수시로 인민재판, 군중재판을 곳곳에서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때때로 재판 중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본인들도 상당수였다.¹⁴⁾

(1982년~현재)는 생략한다.

13) 佐藤知也, 『平壤で過ごした12年の日々』(東京: 光陽出版社, 2009), p.110.

14) 연정은,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 15~17쪽.

<표 1> 조선 내에서의 종전직후의 사건 수(1945년 8월 16일~23일)

사건	총건수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총수	913	64	189	278	135	165	42	33	7
경찰관서에 대한 습격·점거·접수요구 등	149	12	38	39	17	34	4	3	2
총기·탄약의 약탈	41	1	12	12	12	3	1	-	-
내지인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접수요구	66	3	19	16	13	9	-	6	-
조선인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접수요구	111	4	21	26	32	24	2	1	1
일반 행정관청 대한 습격	86	4	26	23	12	10	6	4	1
조선인관공리에 대한 폭행·협박·약탈	109	3	28	44	7	12	13	2	-
신사·봉안전에 대한 방화·파괴	136	21	25	27	14	45	3	1	-
내지인에 대한 폭행·협박·약탈 기타	80	11	8	21	10	11	7	12	-
조선인에 대한 폭행·협박·약탈 기타	60	-	-	50	2	1	4	2	1
기타	75	5	12	20	16	16	2	2	2

자료: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東京: 巖南堂書店, 1964), 93쪽 제인용

이처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북한 각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등장한 인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나름의 지방정권을 형성하였다. 소련군은 입북한 후 인민위원회에게 정식으로 행정, 사법, 치안권을 인계하였지만, 위와 같은 친일인사들에 대한 폭력은 계속 지속되었다. 이 상황은 달리 말하면 일본인 전직자와 친일 경력이 있는 조선인들이 계속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은 결국 해방 후 2달여가 지난 1945년 10월 북조선 행정 10국 사법국이 창설되면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기에는 인력과 시간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련 고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제시기의 법체계를 답습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한 연설¹⁵⁾을 보면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한 것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낡은 사법제도의 잔재를 완전히 숙청하고 민주주의 새조선 건설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적사법제도를 세우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됩니다.

라고 하며 일제시기와의 단절성을 주장하지만, 1945년 12월 16일에 이미 NZ공장 사건을 재판하여 일본인들 6명에게 7년을 구형할 정도로 빠르게 사법재판을 시행했는데,¹⁶⁾ 이것이 가능 했던 이유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흡수한 채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사법부 관련 결정서를 보면 <사법재판소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1946년 3월 6일), <북조선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1946년 5월 14일), <북조선의 검찰소 예심 및 보안기관의 형사사건심리에 관한 법령>(1946년 6월 20일) 등을 해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하고 있었다.¹⁷⁾ 판사와 검사의 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후 북한의 법관은 일제시기에 일본 및 대학법과

1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 4차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11~112쪽.

16) 鎌田正二, 『北鮮の日本人苦難記—日窒興南工場の最後』(東京: 時事通信社, 1970), p.427.

17) 7-360(Item # 197 사법기관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주요법령급 결정집,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내지는 법률전문학교 출신자를 우대했고, 법관임용 시험과목을 봐도 일제시대의 민법, 형법, 소송법, 각종 법률 및 현 정부의 시정 사상동향 등을 필기시험으로 보았으며 정치성만을 구두시험으로 평가하였다.¹⁸⁾ 일제시기 일본법을 수학한 사람들로 법관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판 또한 구성 면에서는 일제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당시 일제식 법제에 익숙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형이 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재판 절차는 일제시기와 거의 똑같이 이루어졌다.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판결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교도소만은 그 명칭을 “인민 교화소”로 고쳤다. 교화소 내의 규율 등은 일제시대에 비해 상당히 관대했으며, 수형자의 고통은 완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시기의 교도소와 가장 큰 차이였지만 교화소 내의 구타 기타 제재는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북한 간수의 차별이 심하였으며, 늘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교화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¹⁹⁾

이러한 상황이 팽배한 가운데 당시 재판을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사이에서는 북한지역을 탈출해 월남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북한에 남아 있을 경우 인민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군중재판 단계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탈출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받게 될 형벌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양에 잔류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재판대상이 된 일본인들은 도청이나 군청 등에 소속된 총독부 직원들이었는데, 이것은

18) 김태운, “해방 직후 북한 과학기술 교육기관 교원의 충원과 구성(1945~1948),” 『역사와현실』, 107권(2017) 참고.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p.861.

19)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東京: 巖南堂書店, 1965), p.862.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대다수가 총독부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조사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다.²⁰⁾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곤란했던 것은 재판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악질 전직자’라는 이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당시 ‘악질 전직자’가 어떤 죄를 지은 항목에 들어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일본의 기관에서 일한 사람은 모두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악질 전직자’로 처벌을 받았다. 아래의 기소장은 일제시기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다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의 기소장이다(<그림 1>).²¹⁾

우선 위의 기소장을 보면, 어떠한 법 항목도 기입하지 않은 채 “조선 민족을 압박 착취한 일본인 ‘악질 전직자’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형법 몇 조 몇 항에 있어 처벌하는지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단지 일제시기 일제의 기관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할 이력만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다카사키 히데오는 일제시기 조선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할 악질 전직자였기 때문에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재판은 일제시기 관공서에서 일하지 않았던 일본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조선은행 평양 지점 지배인 와다 구니야스(和田国安)와 지배인 대리 하루구치 에이스케(春口栄助)의 경우 1946년 7월 기소되었는데, 그 죄목은 “전후 조선은행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고의로 경제교란을 꾀했고 자금을 방출했다. 또 북한 정부에 협력하고 재계의 안정을 도모할 임무를 가지는데도 남조선 본점의 지시에 의한 군부 및

20) 佐藤知也, 『平壤で過ごした12年の日々』, p.120.

21)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863.

<그림 1> 다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의 기소장

<기소장>

피심자 高橋英夫(다카하시 히데오)에 대한 악질 전직 사건

1946년 10월 9일, 평안북도 검찰소 검사 홍경석은 1946년 8월 7일 평안북도 검찰소장이 제시한 형사 사건 225호 기록 12페이지에 의하여 표기 사건을 예심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다카하시 히데오는 24살부터 만 십삼 년간 조선 총독부 속을 비롯하여, 호남학무과장·본부 이사관·경성세무감독국경리부장·관세부장·직세부장·본부세무과장·경남재무부장·평북내무부장의 중요 직을 역임하며 조선 민족을 압박 착취한 일본인 ‘악질 전직자’이다.

이상 확정시키는 사실에 대에서는 좌기와 같다.

성명: 高橋英夫(다카하시 히데오)

연령: 38세

주소: 신의주 시신원동 1번지

범죄시의직업: 평안북도 내무부장

전과: 없음

지식정도: 대학

가족: 5명

오른쪽 자(다카사키 히데오)는 전시 직무를 가지고 조선 인민을 압박 하는 착취한 것은 악질 전직에 해당하는 죄를 구성하고, 본 사건은 북한 임시 인민 위원회 사법부 재판소 검찰부의 직무에 관한 기본 원칙 제 11조의 평안북도 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이 재판소에 기소한다.

1946년 10월 11일 평안북도검찰소 검사 홍경석

1946년 10월 14일 평안북도재판소 서기 김익돈

관에 거액의 국고금 지불을 했고, 관동군에 대해서 많이 국폐(國幣)의 변환을 하고 북한 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남겼다”였다.²²⁾ 결론적으로 ‘경제교란죄’와 ‘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 어떠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판결에서는 “배임죄”를 끝까지 적용시켜 1년 형을 확정받게 되었다.

보통 악질전직죄로 재판을 받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나의 죄명은 처음 “반역”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무엇 때문에 반역입니까?”라고 항의하자, “반동”로 바꾸어 “전직죄”라고 하는 기묘한 죄목으로 검찰에 넘기고고 담당관이 위에 “악질”의 두 글자를 붙였다. 사법관과 경찰관, 교도관은 모두 “악질 전직”이란다. 아무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없던 나는 어떤 기소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기다리다 나의 학력에서 이력서전부를 다 쓰지 않았다 “오른쪽 채직 중, 조선인 사상가, 혁명가를 엄벌한 것”이라고 한 데는 아연실색했다. 내가 “증거를 제시” 하라고 하면 증거는 대지 않고 판사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손댈 수가 없다. “전직죄”라는 정치범은 모두 이런 종류였다.²³⁾

이처럼 일본인에게 가해진 “전직죄”는 정확한 기소의 이유도 없었고 마땅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시기 기관에서 근무한 일본인들이면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직죄로 처벌하였고, 이것은 일본 기업, 은행 등에서 일한 일본인들에게 광범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재판의 형태는 “죄에서 기인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처벌을 위한 처벌”이었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복

22) 森田芳夫, 위의 책, p.864.

23) 森田芳夫, 위의 책, pp.865-866.

< 표 2 > 1947년 현재 ‘악질전직죄’로 처벌받은 일본인들의 확정 형과 처벌 이유

번호	이름	처벌	처벌 이유
1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징역 5년 확정	다년간 사법관으로 조선인을 압박하고 특히 조선인 사상범(공산주의자, 조선 독립 운동자)에 대한 사형, 무기 징역 등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악질전직죄에 상응한다.
2	하마다 미사코(浜田みさ子)	징역 5년 확정	훈도 재임 중, 조선인 학생의 장난을 군자에게 진짜 부젓가락을 그 손에 대고 상해를 준 것은 조선인을 열등하게 본 것과 함께, 상해죄를 구성하려 한다. 동인의 범행은 몇 년 전의 일에 속하며, 일제시대 동인은 이미 본 행위 때문에 퇴직 하였고, 범죄로서 문제가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조선 측에서 다시 문제로 다루었다.
3	가지와라 보(梶原某)	징역 4년 확정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도 악질전직죄가 되었다.
4	오노자와 다쓰오(小野沢龍雄)	징역 1년 반 또는 2년 확정	조선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한 것은 당연히 조선인을 압박한 것으로 악질전직죄이다.
5	이시쿠라 아타로(石倉弥太郎)	제1심 징역 2년 반, 공소 중	오노자와 다쓰오(小野沢龍雄)와 마찬가지로 악질전직죄에 상당할 것 한다.
6	와키 마코토(和氣充)	제1심 징역 3년, 공소 중	오노자와 다쓰오(小野沢龍雄)와 마찬가지로 악질전직죄에 상당할 것 한다.
7	하마다 이치조(浜田市蔵)	제1심 무기징역, 공소 중	이십 몇 년 전 국경 경찰관으로 재직 중 자주 경찰 공로장을 수여한 것은, 신성한 조선 독립을 위한 혁명가들을 박해한 것으로 하여, 기증스러운 살인죄이다.
8	미나기 세이유에몬(皆木政右衛門)	제1심 무기징역, 공소 중	하마다 이치조(浜田市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9	이나다 교이치(稲田京一)	제1심 징역 10년, 공소 중	대정 팔년(1919년) 이른바 조선 독립만세사건 때 소방원으로 정주 시내의 경계에 있어서 우연히 소동 중인 조선 사람 수명을 살해한 것은 조선 독립 혁명가에 대한 살인죄로 구성하려 한다.

10	사토 오마 고토 (佐藤 允)	제1심 사형, 공소 중	이나다 교이치(稲田京一)와 마찬가지로, 대정 팔년(1919) 만세사건 때 헌병으로 정주 시내의 경계에 해당하는 조선인 혁명이 다수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11	하가 세이지 (芳賀誠志)	제1심 징역 13년, 공소 중	십수 년 전 국경 경찰관으로 재직 중 비적 토벌에 종사, 살해한 조선 독립혁명분자 살인죄에 해당한다.
12	핫토리 이세마쓰 (服部伊勢松)	초심에서 1년 반 확정, 비상상소를 통해 즉결사형, 항고를 통해 징역 15년 확정	쇼와12, 13(1937, 1938)년경 평안북도 경찰 부장의 경력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징역 1년 반을 받고 복역 중 소련군이 명령한 정치범 석방을 통해 석방된 인물이다. 그런 평안북도 경찰이 독립군 토벌에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이유로 비상 상소되었다.
13	후쿠하라 도미히사 (福原富久一)	1심 사형 2심 징역 15년	옛 국경 경찰관의 신분이었고, 건국 방해 살인이라는 죄목, 일본 경찰관으로 조선 독립단원과 교전 시에 독립운동단원을 살해했다.

자료: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東京: 巖南堂書店, 1965), pp.863~866;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3』(東京: 巖南堂書店, 1980), pp.151~153을 기준으로 비교적 형기가 뚜렷하고, 처벌 이유가 분명한 인물들을 선별하여 필자가 재구성.

성 처벌을 당했다”라고 표현했다. ‘악질전직죄’로 처벌받은 일본인들의 판결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러한 ‘악질전직죄’로 인한 처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근대법에 필수적으로 있었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죄명이 불분명하였으며 기소장에 자세한 기소 이유조차 없었다. <표 2>를 통해 보면, 가지와라 보(梶原某, 3번), 오노자와 다쓰오(小野沢龍雄, 4번), 이시쿠라 야타로(石倉弥太郎, 5번), 와키마코토(和氣充, 6번)는 기소이유가 완전히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들 대부분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후쿠하라 토미히사(福原富久一, 13번)의 경우를 통해 보면, ‘악질전직죄’에서는 일제시기일본과 조선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교전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였고,

사법관들이 일제시기에 했던 사형 선고도 살인으로 규정하였다.²⁴⁾ 이 밖에도 공소시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일본인들에게 만큼은 몇십 년 전의 죄도 기소하는 등 반일감정에 근거한 재판이 연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일제시기 일본인으로서 조선인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벌였던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거된 사건들”이라고 하며 비판하였다.²⁵⁾

이 외에도 해방 직후 아직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북한은 공민증 소유를 기준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법적보호와 처벌도 이루어지게 했는데, 일본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임시공민증을 발급받아야 했다.²⁶⁾ 당시 북한에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에는 2가지의 재판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임시공민증을 외국인에게 발급한 상태에서 기소가 되던지,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둘째는 공민증이 없는 외국인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²⁷⁾ 그런데, 일본인은 당시 신분과 거주이유를 불문하고 치외법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상시적으로 기소되는 상황이 다반사였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표 1>의 하마다 미사코(浜田みさ子, 2번)의 경우 일제시기에 죄에 대한 처벌로 퇴직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처벌하였고, 핫토리 이세마쓰(服部伊勢松, 12번)의 경우 이미 1년 반의 형을 확정해 놓았다가 평안북도 검찰 측이 비상상소를 하여 즉결 사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확정해 버렸다. 형을

24)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p.865~866.

25)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 (1945~1950),” 215쪽; 磯谷季次, 『朝鮮終戦記』(東京: 未來社, 1980).

26) “北朝鮮内公民置交付實施에 대한 細則,” 『史料集』 5, 823쪽.

27) 북조선 법령집(북조선 임시위원회 사법국 편찬, 1947년), NARA RG242 SA2007 2~16(Item # 1054) 274쪽.

확정 받고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이상한 재판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심지어 핫토리 이세마쓰의 경우 자신이 범한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았다. 그의 처벌이유는 평안북도 경찰이 독립군토벌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였는데, 핫토리가 근무하던 시기, 즉 만주 건국 후 이른바 ‘토벌’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었는데, 재심을 통해 즉결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이다.²⁸⁾

이처럼 ‘악질전직죄’ 자체가 기존 법규에 없는 죄목이 붙여진 것이 많았고 재판은 북한 전반에서 보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황해도에서는 일본인을 1946년 봄까지 거의 석방했지만 평안 남북에서는 소련군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 또는 소련군에서 석방된 사범 관계자 중 특히 사상범을 다룬 것을 조선 측에서 다시 체포했다. 그 죄는 처음에는 “정치범”이었다가 나중에는 일제시기 관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일까지 범죄로 치부했다. 일본인들이 간혹 “내가 왜 잡혀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물으면 북한의 재판관들은 “우리도 과거 공산주의의 이상과 그 명령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도 일본의 재판에서는 죄인으로서 긴 형기를 받았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른 채였다”라고 답하였다.²⁹⁾

이러한 소위 “악질 전직”에 대한 심판은 인민재판소뿐만 아니라 군중재판에서도 이루어졌다. 성흥(成興)광산에서는 1945년 9월 24일에 적위대³⁰⁾에 의한 이른바 군중재판이 있었고 그 때의 폭력 때문에 광산

28)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865.

29) 森田芳夫, 위의 책, p.862.

30) 해방 직후 북한에는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무장조직들이 있었는데, 1. 민족주의 계열의 자위대, 2.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대,

직원 3명과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그 외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 적위대는 소련군 모두 인민 위원회와도 성흥광산 직원과도 관계가 전혀 없는 집단이었고 평양에 귀환했다가 해산했다.³¹⁾ 즉 어떠한 사법적 권리도 없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어떠한 규정에도 의하지 않고, 심한 경우 “사형”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군중재판은 “즉결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군중재판에 회부된 일본인들은 거의 모든 경우가 사망했다.

북한 자료에서도 일본인을 ‘민족반역자’로 판결한 재판사례는 여러 번 등장한다.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성·양양에서 1946년 9월 중순 사형판결이 있었던 일본인들이 사형집행 전 소련군의 명령으로 중지된 경우가 있었고,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³²⁾ 또한 북한 각 지역에 있던 잔류일본인들에 대해서는 귀환하기 이전까지 북한 당국의 꾸준한 동향 감시가 따라다녔다.³³⁾

해방 직후 북한의 경우에는 법제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북일본인에게 만큼은 그가 전범이든지 아니든지 주먹구구식, 또는 상황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해 가며 차별적으로 재판을 하였다. 그 형식과 절차도 때때로 변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재북일본인들에게는 “보복성 재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3. 소련군 진주 후 각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성된 적위대 등 3계 무장 세력들이 존재하여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北朝雖內公民置交付實施에 대한 細則,” 『史料集』 9, 9~12쪽

31)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pp.857~858.

32) “북조선 제이차 사법책임자회의 강원도 사업보고서(강원도검찰소),” 『史料集』 9, 9~12쪽.

33) 위의 글, 116쪽.

2) 경제법적 지위: ‘물수’와 국유화사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잔류일본인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법은 제국주의 일본이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일제시기 동안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시각 자체가 “수탈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련군 또한 간접적으로 이러한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련군의 반일감정에 대한 지지는 소련군이 북한지역에서 행했던 약탈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일본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억압되었던 민족의식이 폭발하면서 조선인들이 가진 반일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북일본인들은 법적인 수단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해방 직후 북한의 헌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삼림, 하해, 주요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 일본인 또는 친일본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데, 위와 같이 일본인들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일단 몰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 국가의 법의 근간이며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헌법의 1장에서 일본인들의 경제권 몰수에 대한 부분을 2조를 사용하여 할애했다. 해방 직후 적산(敵産)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의 일부조차 고려하지 않고, 모두를 국유화시킨 것은 당시 재북일본인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인들의 재산 몰수는 법체계가 완성된 1948년 이전부터 법령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1945년 12월경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 토지의 몰수와 처리 방법을 제안한 임시적 성격의 시정요강이 발표되었고, 같은 달 16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는 ‘접수 일본인 토지 관리규칙’을 포고하였다. 이 규정은 임시 인민위원회 아래 일본인들의 재산을 접수하겠다는 것이었다.³⁴⁾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³⁵⁾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일본인들의 토지와 각종 시설의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34)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 (1945~1950),” 226쪽.

35)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 『史料集』 5, 232쪽.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주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위의 법 조항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일본인들과 지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상태에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과 회사시설도 마찬가지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58호를 통해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통해 일본인들이 사유하고 있던 각종 산업시설을 국유화하였다. 어찌 보면 패전국 국민들의 사유 재산을 노획물로 삼는 것이 감정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도, 엄연히 당시는 법을 위주로 돌아가는 법치주의사회였다. 북한은 해방 직후 빠르게 경제를 재건시키는 와중에 법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총독부 소유의 적산기업과 토지만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개개인의 사유지와 사유재산까지 노획물로 삼는 것은 엄연히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개인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던 채권까지 압수당한 일본인들은 이러한 강제 몰수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을 대변해 줄 국가가 없었으며 당시 소련군도 이러한 상황을 묵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과 소련군은 일본인 한 가정에 400엔 만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몰수하였다. 한 달 최소한도로 1인당 163엔 정도로 살아야 하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껴도 4인 가족이 1달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³⁶⁾ 일본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 정부가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 귀환하기 전까지의 생활비를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수의 일본인들은 살기 위해 38 이남으로의 월남을 선택했다.³⁸⁾

이렇게 해방 직후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가 빠르게 “몰수”사업을 진행한 것은 소련군의 경제정책과도 닿아 있었다. 종전 후 북한도 경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그것은 소련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했지만, 미국보다 장기간의 전쟁을 치렀고, 물자와 자본, 인력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적·인적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소련은 모든 주둔비용을 “현지조달”로 해결하였다.³⁹⁾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행해진 소련군의 약탈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36)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3』(東京: 巖南堂書店, 1980), p.186, p.246.

37)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958.

38)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61.

39)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110쪽.

물론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에게 행한 약탈도 문제였지만, 북한의 산업시설과 적산에 대한 몰수가 더 큰 문제로 작용했다. 소련은 북한에서 38개소의 중공업 공장들을 복구하여 1,050만 엔에 달하는 전리품과 1410만 엔에 달하는 신제품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반출해 갔다.⁴⁰⁾ 수치상으로 표기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반출이었는데, 당시 북한에 있던 산업시설 중 “쓸 만한 것”은 소련으로 반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이러한 소련군의 경제 정책 때문에 인민위원회는 예산을 세울 재원 조차 없었고,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동산에 관계없이 일본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몰수는 크게는 공장, 채권에서 적게는 집의 자전거까지 공출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해방 직후 각지에 자체적으로 성립된 <일본인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하지만, 매일같이 일본인 주거지역으로 공출명령과 트럭들이 오가며 난로, 벽시계, 가구 등 할 것 없이 각종 생필품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자, <일본인회>도 속수무책이었다.⁴¹⁾

당시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공출되었는지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두루두루 옷, 가구, 침구, 식기 등이 1945년 9월부터 압수되었다. 개인들이 은행을 통해 소유한 채권이나 예금의 경우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몰수되어있거나 일부가 압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인민위원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파악하여 얼마 이상의 현금을 헌납할 것을 요구하였다.⁴²⁾ 게다가 일본인들은

40)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0호 (1993), 309쪽.

41)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950.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공출해 가는 사람이 인민위원회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일본에서 조선 땅에 이민 와서 살았던 일본 민간인들은 “일본의 패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합법적이었던 불법적이었던 북한과 소련군정에게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법”에 근거하여 당시 일본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몰수”와 “국유화”만 있었을 뿐 어떠한 경제적 보호 기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 일본인들에게 주어진 각종 과거 책임은 사실상 여러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사재판이 다수였고,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도 현대 법적인 요소와 괴리가 컸다. 그리고 해방 직후 북한이 적용한 법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법령집에 8.15 전의 범죄행위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었다.⁴³⁾ 물론 전범들의 경우에는 전후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많은 일본인들은 주로 조선의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었고, 간접적인 책임은 있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은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즉 8.15 이전의 범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은 오직 조선인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었고, 일본인들은 귀환하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야 했다.

42) 森田芳夫, 위의 책, pp.950-952.

43) 법률집(한승봉 수기학습장)1949, NARA RG242 SA2007 8-145_Item # 157.

3. ‘우대’를 중심으로 한 재북일본인 기술자의 법적 대우

위와 같이 다수의 일본인들이 경제적·형사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북한의 국가건설에 영향을 준 일본인들도 있었다. 바로 일본인 기술자 그룹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조선인 기술자들보다도 좋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귀환하는 그 순간까지 북한에서 우대를 받았다. 실제로 잔류했던 일본인들도 기술자 그룹이 우대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⁴⁴⁾ 이것은 국가건설기 북한의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공식간행물에서 일본제국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며 일제 부역자들의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북한의 모습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물론 해방 직후에는 일본인 기술자들도 일제시기 경찰·사법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스파이’로 규정되어 소련군으로부터 재판을 받았고, 선고된 형량은 중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⁴⁵⁾ 이렇게 일본인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자, 일본인들은

44) 佐藤知也, 『平壤で過ごした12年の日々』, pp.159~164.

45) 常塚秀次·佐藤信重·稻垣鶴一郎·安藤俊種·白倉清二·田村茂·岡野正典의 일본인 기술자가 “일본인부의 조선인 촉탁 김정조에 돈을 주어 남조선에 보냈다”는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소련군은 “일본인 기술자 다수를 소련·북한 측의 요구·명령에 반하여 귀환하게 한 것은 조선 민주주의적 건설의 방해이자,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들 일본인 귀환 기술자는 일본에서 미국 CIC의 조사에 응해서 북한의 실정, 공장 사정과 경제 사정 등을 보고하기에 틀림없다. 이는 미국 CIC에 첩보를 공급하는 첩보 행위이다. 이들의 범행을 집단으로 했다”라고 집단을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소련형법 58조에 해당하는 반혁명행위법에 따라 특별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25년 구금을 선고받았다.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p.713, p.855.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 38 이남으로 남하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남하는 소련군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입장에서 이 남하 대열에 속해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46년 초부터 북한은 1945년에 수립해 놓은 각종 ‘국유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유화한 각종 산업시설과 토지를 이용할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북한 내에는 이러한 고급 기술이 필요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소련군도 일제식으로 지어진 공장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입장이었다. 즉, 당장 북한의 산업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본인 고급 기술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 중에는 일제시기 고등 과학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 자체가 매우 적었던 데다가 고등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월남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급 기술자들은 공장기술자가 되는 것보다 관리나 교원이 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서울은 일제시기 각종 학교와 관공서가 있었고, 해방 직후에도 각 기관에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급 기술자 대부분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서울로 이주했고 이것은 북한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⁴⁶⁾

일본인들이 없이는 경제개발도 없다는 것을 안 소련군정과 북한은 빠르게 일본인들을 1946년 8월 산업국유화정책에 뒤이은 사업으로 <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시행에 관한 건>⁴⁷⁾을 시행하여 북한 전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조사하고, 일본인 기술자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6)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홍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40권 2호 (1997).

47) 「技術者確保에 關한 決定書施行에 關한 件(1946.8.17)」, 『史料集』 5, 178쪽.

<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시행에 관한 건>에서 일본인 기술자에
대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조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管内에 있는 技術者를 調査하여 그 技術의
種類及國籍의 如何를 不問하고 一九四六年八月末日까지 技術者登
錄을 完了 하되 工業技術聯盟과 緊密한 連絡을 지어 登錄事業을 成
功的으로 完了시킬 것
- 제 2조 各國營企業場責任者로 하여금 前條 技術者登錄事業에 關하여 積極
協力케 할 것
- 제 3조 各國營企業場責任者에게 日本人技術者에 對하여 無益하고 偏狹한 民
族의 感情을 一掃하여 그들로 하여금 國有産業復興에 積極協力케 할
責任을 지을 것
- 제 4조 各 企業場責任者로 하여금 技術者를 厚待케 하되 特히 日本人技術
者에 對하여서는 左記의 優待條件을 施行케 할 것
1. 住宅은 原則으로 本來 使用하던 住宅을 提供할 것.
 2. 給料는 專門大學卒業者程度 月額 2000원 以上, 中等卒業者程度 月額
1,500圓 以上을 支給할 것.
 3. 食糧, 被服, 寢具 其他 特히 越冬에 必要한 生活品은 責任지고 配給할
것.
 4. 發明, 發見, 考案 及 著述에 對하여서는 產業局에서 審査後 特別히
褒賞할 方針이니 積極 獎勵할 것.
 5.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技術者登錄名簿와 配屬企業場名簿등 各 企
業場責任者는 配屬技術者에 대한 住宅, 待遇, 食糧, 被服 其他 生活必
需品의 供給狀況을 9月 20日까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產業局長에
게 報告할 것.

위의 복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지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외에도 기술자들의 법적 “우대”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마이 세지로(今井瀨次郎)의 재판 결과이다. 서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을 지낸 이마이 세지로는 1945년 9월 6일 “평양 시내에 고압의 전류를 흘려 시내를 불태우려 했다”는 혐의로 형사사건에 입건되었는데, 1946년 3월 소련군에 의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어느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4월 1일 다시 북한 측으로부터 체포를 당해 감옥에 갇혔는데, 감금 이후에 어떠한 재판도 없이 풀려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마이 세지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감옥에서 <북조선산업개발책>을 집필한 뒤에 석방되었다.⁴⁸⁾

심지어 석방된 이후에는 산업국장이었던 이문환의 집에 초청받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문환은 이마이 세지로에게 북한의 산업재건을 위한 조선에 남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마이 세지로는 “북한에 남게 될 경우 조선인들의 (일본인을 향한) 횡포에 태평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문환은 “종전 시에 일본인들을 괴롭히던 무리는 사라지고 지금 정부 수뇌부들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는데,⁴⁹⁾ 이것은 이마이 세지로를 북한에 잔류하게 하기 위한 이문환의 계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 기술자들에게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조선무연탄회사사장이었던 가토 이소이타루(加藤五十造)의 경우에도 해방 직후 1945년 9월 21일 영문도 모른 채 대동경찰서에 구금되

48)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238쪽;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3권, 468쪽.

49)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3』, pp.468~469.

었다. 이유는 경성에 있던 조선무연탄회사가 8.15 이후에 일본에 돈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10월 27일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 달 만에 풀려난 셈이었다. 그가 풀려나기 4일 전인 10월 23일,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석탄관리국이 생기면서 관리 국장이었던 정익현(鄭益鉉, 전 강원도의 흑연 광산 경영자)이 탄광 경영에 일본인 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가토를 석탄산업에 기술자로 초빙하였고,⁵⁰⁾ 석탄국에서 일하게 되자 27일 석방이 된 것이었다.⁵¹⁾

이들 이외에도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던 기술자들은 기술전문학교의 선생님이 되거나 일본어로 공업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그들의 신분을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렸다.⁵²⁾ 심지어 북한 내에서 “일본인들은 요구가 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계를 수리하고 산업시설을 운영해야 할 당사자들이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다.⁵³⁾ 수용소의 열악한 생활과 굶주림에 못 이겨 남하하는 일본인들과 불분명한 이유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을 살았던 일본인 법관과 비교하면 일본인 기술자 그룹이 엄청난 혜택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일본인 기술자들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처해지기도 했다. 평양 장진리에 있던 영제요업공장의 공장장은 내화벽돌 생산이 목표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⁵⁴⁾ 그리고 황해제철

50) 가토 이소이타루(加藤五十造) 이 외에도 高松榮五郎·中野音松·田村十三治·土松米一郎·佐塚安雄·土屋良作·吉村寅雄·齋藤伝四郎·桑野晋·安部次回郎·照井市五郎·篠崎·坂田 氏 등 일본인 기술자 13명이 석탄관리국에 함께 초빙되었다.

51)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3』, p.471.

52) 森田芳夫, 위의 책, p.470.

53) 森田芳夫, 위의 책, p.472.

소에서 일했던 이케다 고히고(池田好比古, 오노다 시멘트 내화 벽돌 공장장)의 경우에도 내화벽돌을 개발하던 중 벽돌의 압연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인민 경제 계획의 파괴자로 재판받았을 수도 있다고 회고하였다.⁵⁵⁾ 하지만, 해방 직후 3년간의 북한의 경제통계를 보면, 연 생산 목표치에 미달한 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잔류하여 우대까지 받으면서 공장지대에 있었던 일본인 기술자들은 각자 가진 기술을 17분과로 나누어 스스로 각 공장에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⁵⁶⁾ 동시에 유용 결정 이후 일본인들은 흥남, 평양, 원산에서 산업과 화학, 전기 전문가로 활동하던 일본인 기술자들을 따로 모아 <북한 공업기술 총연맹 일본인부>(이하 총연맹 일본인부)를 조직하였다.⁵⁷⁾ 이 <총연맹 일본인부>는 북한의 관변단체였던 <북조선 공업기술 총연맹> 산하시설이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그룹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기술자들이 잔류하고 이들이 북한의 산업복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흡수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었다.⁵⁸⁾

<총연맹 일본인부>는 북한의 산업 발전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으며 북한의 기술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총연맹 일본인부>는 개편과 동시에 평양 일본인회의 잔금 18만 원을 물려받았

54) 森田芳夫, 위의 책, p.477.

55) 森田芳夫, 위의 책, p.475.

56) 森田芳夫, 위의 책, pp.384~386.

57)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3(1948.1.10.~1948.7.16.)*. (Chunchon: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1989), 202쪽.

58)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3』, p.568.

고, 원산에서 제1차 귀국선에 올랐던 귀국자들로부터 몰수한 일본은행 권도 일본인부의 자금으로 만들었다. ‘북조선 공업기술 총연맹’ 연간 예산인 30만 원과 비교하면 일본인부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 외에도 일본인 기술자를 향한 특혜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일본인 기술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들을 공장 근처에 따로 마련하였으며, 학생들의 학비는 물론 기술자들의 부모들의 간식비까지 챙겨주었다.⁶⁰⁾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 직접 2백만 엔에 달하는 돈을 재무국에서 차출하여 일본인 기술자 자녀들의 학비로 지원했다는 것이다.⁶¹⁾ 또한 새로운 기술연구에 성공할 경우,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성과급의 정도가 심하게 높았다. 앞서 언급한 이케다 고히고(池田好比古)의 경우 내화벽돌을 3천 마력의 롤러에 넣고 압연하는 기술에 성공하여 1만 엔이라는 성과급을 받았는데,⁶²⁾ 당시 일본인 1인 한 달 생활비가 163엔이었다는 것을 봐서 1만 엔은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400엔으로 귀환할 때까지 살아야 했던 일반 재북일본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던 것이다.

당시 어떠한 법적 테두리 안에 합류할 수 없었던 재북일본인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일본인 기술자들은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의 보호까지 받았고, 조선인기술자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북일본인들의 법적 지위를 통해 보면, 확실히 북한이 국가 건설기에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소위

59) 김성보, 『북한의 역사』1(서울: 역사와비평사, 2014), 101~103쪽.

60)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3』, p.479.

61) 森田芳夫, 위의 책, p.568.

62) 森田芳夫, 위의 책, p.475.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인만을 보호한 것이었고 그 외의 일본인들은 “일제청산, 과거정리”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4. 맺음말

사실 해방 직후 북한은 알려진 사실보다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완벽한 친일청산”은 없던 이야기나 다름없고, 굳이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일 관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북한의 요직에 자리하는 등 대외적으로 선전된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의 모습에는 차이가 많았다.

일본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법제도는 빠르게 정립하였지만, 재판의 형식과 범조문의 대입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일본인들을 필요에 따라 국가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누어 기술자 이외의 일본인들은 일제 청산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의 국가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으로 부과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일본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당시 북한에 있던 일본인 중 10%가 사망했을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 잔류해야만 했다. 필자는 이러한 모순점들이 모두 해방 직후 북한의 유동적인 정치 상황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해방 직후 북한사 연구에서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재북 일본인”들을 통해 해방 직후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였다. 이것은 크게 보면 소련과 북한 건국 세력으로 점철되어 온 주제의 확장이 될 수 있고, 정치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작업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은 의미에서는 “북한 법제사”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에 천착하는 작업이 되었다. 사료가 부족한 북한사 연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사 연구 주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18년 10월 30일 / 수정: 2019년 2월 20일 / 채택: 2월 22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법률집(한승봉 수기학습장), 1949, NARA RG242 SA2007 8-145_Item # 157.
북조선 법령집(북조선 임시위원회 사법국 편찬, 1947년), NARA RG242 SA2007
2~16(Item # 1054)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北韓關係史料集 1~79』(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2016).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아베 게이시(安部桂司),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차문석 옮김(서울: 미지북스, 2009).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1(서울: 선인, 2003).
김석형 구술·이향규 정리,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서울: 선인, 2011).
김성보, 『북한의 역사』 1(서울: 역사와비평사, 201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이승기,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비날론 발명 과학자 이승기 박사의 수기』, 김남
현 옮김(서울: 615, 2011).
A. 기토비차·B. 볼소프, 『1946년 북조선의 가을』, 최학송 옮김(서울: 글누리,
2006).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3(1948.1.10.~1948.7.16.) (Chunchon: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1989).

2) 논문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69권(2002).

- 김재웅, “해방 후 북한의 친일파와 일제유산 척결,” 『한국근현대사연구』, 66권 (2013).
-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 (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44호(2014).
-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2008).
- 김태윤, “해방 직후 북한 과학기술 교육기관 교원의 충원과 구성(1945~1948),” 『역사와현실』, 107권(2017).
- 연정은, “북한의 사범·치안체제와 한국전쟁”(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영호,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2008).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鎌田正二, 『北鮮の日本人苦難記—日窒興南工場の最後』(東京: 時事通信社, 1970).
- 磯谷季次, 『朝鮮終戦記』(東京: 未來社, 1980).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東京: 巖南堂書店, 1965).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3』(東京: 巖南堂書店, 1980).
- 佐藤知也, 『平壤で過ごした12年の日々』(東京: 光陽出版社, 2009).
-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Legal situation and character of Japanese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1945-1948): Based o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North Korea

Kim, Taeyoon (University of Seoul)

The paper aimed to examine the situation of Japanese in Chosun who have been studied as colonizers/rulers since 1945. As of August 15, 1945, Japanese who had lived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d in position into subjects from rulers. In the changed world, Japanese rapidly returned to their country or were confined in prisons as prisoners. In addition, based on the 38 parallel, the situations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and those in the southern area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gradually.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in priority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There is lack of studies on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compared to when studies on Japanese in Chosun were well advanc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not enough data because keeping a record of their existence in the North Korea was disliked, and that even the Japanese who

returned to Japan after remaining in the North Korea did not want the memory of the North Korea left on record due to ideological issues. This article has the primary purpose to reproduce the then situation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Especially, it intends to determine how they were treated by the North Korea, whether there was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and what the reason would be if there was within legal limits that can be said to be objective. It is expected that this analysis will enable us to examine how flexibly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that had been focused on ‘Kim Il-sung’ and the Soviet army applied, not simply historical description of the Japanese in the northern area.

Keywords: Japanese technician in North Korea, Japanese in North Korea, North Korea’s judiciary system, North Korea’s criminal la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North Korea, vicious crime